

『자녀사랑 외화로유학적금 특약』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17. 8. 18.

2. 개정내용: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 1 조 ~ 제 11 조 (기재생략) 제 12 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13 조를 적용(준용)합니다.	제 1 조 ~ 제 11 조 (현행과 동일) 제 12 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6 조를 적용(준용)합니다.	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변경으로 조문번호 수정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: 적용